

문서번호	인사처-6298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7.19.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선임	팀장	인사처장	경영전략본부장	
협 조				

---

# 2018년 창립기념 유공직원 표창계획

---

2018.

# 2018년 창립기념 유공직원 표창계획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

☞ 관련근거 : 이사장방침 제39호(2018.03.20) 「2018년 직원 표창 계획」

**표창규모 : 총 106명 (시장 15, 이사장 91)** (단위 : 명)

구 분		표 창 규 모		
		계	일반직	공무직
추 천 방 법	총 계	106	106	
	직원·부서 추천	90	76 (시장 11, 이사장 65)	14 (이사장 14)
	노조 추천	16	16 (시장4, 이사장 12)	

※ 일반직 : 사무, 기술, 조사, 조무, 상수도, 사회복지직 포함

※ 직군별 현원 비례하여 표창 수여인원 안분

※ 예산범위 내 노조 추천분 증(연합노조 2)

## 선발요건 및 제외대상

- 추천과 심의는 인사규정 제45조(추천과 심의)에 의함
- 선발요건 : 인사규정 제41조(표창장 수여대상) 해당자
- 제외대상(결격사유) ※ 기간산정은 부서추천심사위원회 결과 제출일('18.8.1)로부터 함

1.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
2.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 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강등(정직 3월 종료일로부터) 24월 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
3. 주의·경고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유공 제외
4.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시장 표창의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제외 대상에 아래 기준이 포함**

- 징계처분 미말소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신설부서 제외), 공단 근속 기간 3년 미만인 자

## □ 추천방법별 선발절차

### 직원·부서 추천(전직원)

<p>표창대상자 추천 〈전 직원 → 각 부서〉 (~'18. 7.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권자 : 전직원 (직군, 부서 구분 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추천)</li> <li>○ 추천방법 : 피추천자가 소속된 부서의 담당자에 <u>약식공적조서(붙임1)</u> 제출 * 이메일, 서면 등 공적조서 제출방법은 자율</li> </ul>
<p>부서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부서〉 ( '18.7.27~ 7.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부서별 자체적으로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서장 / 위원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자율구성)</li> <li>○ 역할 : 자율추천된 自부서직원의 최종 추천여부 및 순위 결정 - 부서별 확정된 추천 가능인원 이하로 추천 (다음페이지 표 참고)</li> <li>○ 평가 : <u>평가기준(붙임2)</u>에 의거하여 부서별 자율평가 - 평가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여부 및 순위를 정하되, 여성, 하위직 및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부서추천심사위원회 운영시 추천자는 비공개 (추천자의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평가 가능하도록 주의요망)</li> </ul>
<p>추천심사위원회 결과 및 공적조서 제출 〈각 부서 → 인사처〉 ( '18.7.27~ 8.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추천명단(붙임3)</u> 및 <u>추천심사위원회 운영결과(심의의결서-붙임4)</u> 제출</li> <li>○ 부서별 확정된 추천인원 <u>限 공적조서</u> 등록(제출) * 운영결과 문서통보 후, ETIS 포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적조서 등록</li> </ul>
<p>표창대상 및 훈격 결정 〈상벌위원회〉 ( '18. 8. 3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li> </ul>

### 노조 추천

- 추천대상자 공적조서(붙임5)인사처 제출(전자문서) → 상벌위 적격 심의  
\* 이사장 12(시설공단노조 8,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1, 상수도노조 1, 연합노조2), 시장 4(시설공단노조)

**<부서별 추천심사위원회 : 추천인원>**

※ **최종추천 가능 인원 : 총 180명** \*표창인원의 2배수

- ① 자율추천대상자 限, 부서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부서별 추천 가능인원 이하로 최종추천
- ② 표창규모 2배수를 부서별 현원비례에 따라 안분 (최소1인 이상)

○ **일 반 직(152명) : 상별위 추천 → 76명 선발**

구분	계	감사실	기획조정	인사	총무	인재개발	안전관리	상가	추모시설	장콜택시	월드컵	돛경기장	대공원	청계천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환경	교통정보	공사 1	공사 2	공사 3	공동구	상수도	주차시설	교통시설	자전거	홍보마케팅
현원	2,624	22	33	33	46	13	12	136	154	511	74	27	80	62	83	130	135	58	29	59	48	80	386	199	175	26	13
추천	152	1	2	2	3	1	1	8	9	29	4	1	5	4	5	7	8	3	2	3	3	5	22	12	10	1	1

○ **공 무 직(28명) : 상별위 추천 → 14명 선발** \*공동구 기(既)수여 : 추천 제외

구분	계	총무	상가	추모시설	월드컵	돛경기장	대공원	청계천	도로환경	공동구	주차시설	교통시설	공공자전거
현원	563	29	256	18	15	29	32	13	9	1	11	15	135
추천	28	1	14	1	1	1	2	1	1	0	1	1	4

**□ 행정사항**

- 추천 기준일 : 2018. 8. 1(수)
- 부서추천심사위원회 결과 및 공적조서 등록·제출 기한 : 2018. 8. 1(수)
  -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 없는 것으로 간주, 기한 이후 시스템상 공적조서 등록 불가 \*기한엄수
  - ※ 표창추천 후 사회적 물의,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인사처로 철회 요청
- 부서별 (창립기념일)표창담당자 선정·운영(서무 등)
  - 추천대상자 (약식)공적조서 수합, 추천자명단 및 추천심사위원회 결과(→인사처)제출
  - 공적조서 ETIS 등록, 추후 표창장 수령 및 배부

- 붙 임 :**
1. 약식 공적조서 1부.
  2. 추천심사위원회 평가 기준표 1부.
  3. 부서별 직원추천 명단 작성양식 1부.
  4. 부서별 추천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5. 정식 공적조서(노조추천) 1부. 끝.